

[별표]<개정 1991.6.27, 1998.2.20>

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

구분	자	격	기	준
가	1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5.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6.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.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9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		
나	1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.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4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.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6.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		
다	1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			

	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.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4년이상인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라	1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.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자 4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능사1급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마	위 "가" 내지 "라"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·기술·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

비고 : 위 표의 가의 제9호, 나,의 제7호, 다의 제6호, 라의 제6호 및 마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,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